

부록 2-나-1

1. 부속서 2-나는 부속서 2-나 제1조제2항에 기재된 다음의 제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
가. 유럽연합의 의무의 경우, 이 협정의 서명일에, 특정 전압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기기와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/95/EC(성문판), 또는 전자파적합성에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근접화에 관한 것으로서 지침 89/336/EEC를 폐기하는 2004년 12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4/108/EC, 또는 무선기기 및 전기통신 단말기기와 그 적합성 상호 인정에 관한 1999년 3월 9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1999/5/EC의 안전 또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, 그리고

나. 대한민국의 의무의 경우, 이 협정의 서명일에, 전파법(법률 제8867호, 2008. 2. 29.), 전기통신기본법(법률 제8974호, 2008. 3. 21.) 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(법률 제8852호, 2008. 2. 29.)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¹⁾

2. 양 당사자는, 부속서 2-나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부록에 기재된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이 전자제품 전체를 포함할 의도임을 양해한다. 어느 제품이 어느 한 쪽 당사자에 대하여 부속서 2-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나, 이 협정의 서명 시 또는 그 이후에²⁾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3자 강제인증 대상이 되나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,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제품에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필요할 수 있는 유사한 대우를 할 수 있다.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, 그 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통보하고 협의의 위한 3개월의 기간을 제공한다.

1) 이 호에도 불구하고, 대한민국은 필요한 때에 직류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를 이 조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2) 예를 들어 부속서 2-나 제6조에 따른 것이거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지침 2004/108/EC 제1(4)조에 따라 특정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